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5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윤후덕 · 최기상
임호선 · 채현일 · 임미애
신정훈 · 임오경 · 장종태
김태선 · 박정현 · 김주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,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,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허가 이후 시설·인력, 동물복지·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종합하여 재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(안 제22조),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,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

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 등).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허가의 유효기간 등)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

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. 다만,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제8조제4항(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 또는 갱신허가의 남은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

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4년으로 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허가”는 “갱신허가”로 본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허가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허가 시”를 “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시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허가 시”를 “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시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동물 관리실태,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, 근무자의 근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사 시기,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”을 “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1.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
2.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
3.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
4.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
5.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여부

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허가 또는 변경허가”를 각각 “허가
· 변경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
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
2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
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실시한 정기검사는 같은
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허가의 유효기간 등) ①</u> <u>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</u> <u>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</u> <u>날부터 4년으로 한다. 다만, 허</u> <u>가의 유효기간 중에 제8조제4</u> <u>항(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</u> <u>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변경허</u> <u>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</u> <u>간은 종전 허가 또는 갱신허가</u> <u>의 남은 유효기간으로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</u> <u>만료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</u> <u>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</u> <u>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</u> <u>신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 <u>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</u> <u>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</u> <u>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</u> <u>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</u> <u>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</u> <u>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</u> <u>우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갱신</u> <u>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</u>

	<u>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.</u> <u>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4년으로 한다.</u> <u>⑤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허가”는 “갱신허가”로 본다.</u> <u>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허가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16조(안전관리) ① (생 략)	제16조(안전관리) ① (현행과 같 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	② -----

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·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생략)

제17조(질병관리) ① (생략)

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
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
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
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
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헌
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
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
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
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

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
른 갱신허가 시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질병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허가
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
신허가 시-----

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제22조(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,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, 시·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)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) ① -----

-----소속
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동물 관리실태,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, 근무자의 근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
준수 여부

2.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,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

관리계획 준수 여부

3.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

4.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

5.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여부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-----
-----.

제3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허가·변경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-----

2. -----
-----허가·변경허가 또는 제8조의2제2항

3. ~ 6. (생략) ③ (생략)	<u>에 따른 갱신허가를-----</u>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